「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2020년 08월 28일 이명순 의원이 발의하고, 2020년 0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2009년 9월 처음 제정·실시 되어온 기존 조례를 의정모니터 모집에 공정성을 두고, 역할을 확대 명시하여 진정한 열린 의정 구현의 목적을 살리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정모니터 구성을 읍·면장추천에서 공개모집 원칙으로 변경(안 제3조)
- 나.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명시 및 확대(안 제5조)
- 다. 의견 제출을 서면원칙에서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출방법 다양화(안 제6조)
- 라. 활동 독려를 위한 우수모니터 표창규정 신설(안 제9조)
- 마. 관계기관 및 의정모니터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안 제11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 모집에 공정성을 두고, 역할을 확대 명시하여

진정한 열린 의정 구현의 목적을 살리고자 함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O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의정모니터 구성을

기존의 읍·면장의 추천에서 공개모집의 원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u>모니터 활동 의견제출 방법을 서면원칙을 삭제하고 다양화하였으며</u> 안 제9조에서는 우수모니터 표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O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의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변경**,

"모든 주민에 공정한 기회를 준 것"에 의미가 크다 보며,

관련 전국입법례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정모니터 구성관련 전국의회 입법례

의정모니터 조례제정 전국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방법
단양군, 원주시, 철원군, 홍천군, 횡성군, 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읍·면장 추천 또는 의원 추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북구, 동두천시,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세종특별자치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구리시, 충청남도, 천안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u>공개모집</u>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